

다전공 이수 승인제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① 본 운영지침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공의 이수방법) ⑤항에 의거 다전공 이수자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전공 이수방법) ① 다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다전공 이수를 신청한 후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다전공 이수가 승인된 자는 학칙,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전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본전공과 다전공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동일한 학수번호의 교과목은 중복 인정하나,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본전공과 다전공의 이수 교과목의 교과목명만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정을 원하는 단과대학은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다전공은 2개의 전공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3조(다전공 신청 가능 전공) ① 다전공 이수 희망자는 학칙에 의거 설치된 모든 전공의 이수 신청이 가능하다. 단,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다전공 신청자격) ① 다전공 신청은 2학기 이상(편입생은 1학기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단,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학과(전공)에서는 소속 단과대학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선수과목 이수 등 다전공 이수신청을 위한 별도의 자격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다전공 승인정원) ① 다전공 승인정원은 전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단, 다음은 예외로 한다.

1) 경영학과 전공의 다전공 승인정원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서 각각 전년도 입학정원의 30%로 한다.

2) 융합전공, 학부 내 다전공 및 연계전공은 다전공 승인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학년도별 다전공 승인정원은 학기별로 각 2분의 1씩 선별하되, 1학기에 선별하지 않은 잔여 인원은 2학기에 추가하여 선별할 수 있다.

제6조(다전공 승인기준) ① 다전공 승인기준은 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고려하여 해당대학 학장이 정한다.

제7조(다전공 이수 포기) ① 다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인 학기의 소정의 기간에 다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다전공 표기) ① 다전공은 신청순서에 따라 제2전공, 제3전공으로 칭하며, 학위증서에는 전공 순서에 따라 전공명 및 학위명을 표기한다.

② 두 개의 다전공을 이수하는 자가 제2전공의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3전공이 2전 공으로 변경된다.

제9조(적용대상) ① 본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각호의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 서울캠퍼스 : 2006학년도

2) 국제캠퍼스 : 2012학년도

② 본 운영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승인정원에 관계없이 다전공 허용

2) 신청가능범위는 제3조와 동일 적용

3) 다전공 신규, 변경, 삭제는 다전공 승인 적용 대상자와 동일한 기간에 진행

부칙

1.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200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지침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지침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운영지침 제3조(다전공 신청 가능 전공) 제1항[별표1]에 의거한 다전공 이수가 금지된 전공 중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는 2025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적용하며, 2025학년도부터 정보디스플레이학과로의 다전공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지침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다전공 이수가 금지된 전공

1. 소속별 다전공 이수금지 전공

- 학생 소속에 따라 이수가 불가능한 전공

학생 소속	서울캠퍼스 설치 전공	국제캠퍼스 설치 전공
서울 캠퍼스	의·약학 계열, 간호과학대학, 예·체능계열, 자율전공학부,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학부(과)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영미어문전공/영미문화전공), 동서의과학과, 자유전공학부
국제 캠퍼스	의·약학 계열, 간호과학대학, 예·체능계열, 자율전공학부,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학부(과)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동서의과학과, 자유전공학부

2. 기타 제한사항

- 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모집단위 내 전공은 1개 전공만 선택 가능하다.
- 나.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 소속 학생은 무역학과를 다전공할 수 없다.